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0년 03월 10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0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평창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3조)

나. 군수의 책무로서 먹거리 정책 시행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전략 수립(안 제4조)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7~8조)

라. 먹거리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규정(안 제10~13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규정(안 제14~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선순환 체계 구축 내용의 3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먹거리 정책 시행 및 먹거리 전략 수립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먹거리 종합전략, 먹거리 체계 구축,

선순환 체계 구축의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구축 및 민관합동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본 조례안은 이번에 제출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및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내용을 주로 한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